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8-99
----------	-------

발의연월일 : 2018. 10. .

제안자 : 운영위원장

##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 나. 위원 수는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 2. 제안이유

- 80년이 넘게 서강·합정동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당인리 발전소가 서울복합화력 1·2호기 건설 사업 시행 중으로 사업 기간 중에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인 주민편익시설이 건설되어야 하나 현재 착공은커녕 도시계획변경도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문제점과 그로 인한 많은 민원 제기로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촉구하고자

- 마포구의회는 당인리발전소 부지에 마포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문화(체육)공간 조성을 위해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파악하여 조속히 주민편익시설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특별위원회’ 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헌법 전문의 안전 원리와 제10조 기본권보장의무로부터 도출되는 안전에 관한 권리는 국민의 안전한 삶의 영위를 통한 생명, 신체, 재산의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또한 마땅히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 당인리 발전소는 “광혜시원” 즉, 빛의 혜택을 누리는 발원지라는 뜻으로 1930년 1만 kw 석탄화력발전소가 준공되면서 시작되었고 88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발전소의 연료 변경사태에 따라 유연석탄과 방카C유 연료를 사용하면서 비산먼지와 그을음으로 인해 그 피해를 겪은 주민들의 고통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지역에 거주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 이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당인리 발전소는 2000년 중반 즈음 발전소의 수명이 다 되어 발전소를 폐기하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는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검토안도 있었지만 2010년 4월 한전에서 이전 포기를 발표하였고, 2011년 8월 발전소 지하화가 결정되었다.
- 이에 2012년 8월에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안전성 검증 및 지상부 공원 조성, 서강동·합정동 주민편익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내용으로 회의를 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확약받아 놓은 상태이나 착공은커녕 설계, 도시계획 변경도 진행하지 않아 각종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지역주민들을 위한 많은 지원설 중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민편익시설 체육관 하나만 남아있다. 주민들이 꿈에 그리던 잔디공원을 조성하여 쉼터를 마련, 제공해 주어야 한다.
- 주민편익시설은 당인동 1-28, 29에 유아에서 성인까지 전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구성된 지상3층과 지하2층으로 2018년 6월에 착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2018년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아직도 착공 소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인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의 실시계획변경인가의 조속한 시행 등 마포구의 최대한의 행정지원으로 준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 마포구의회는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마포구민의 안전한 문화(체육)공간 조성을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파악하여 조속히 주민편익시설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한다.

2018. 1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 [ 관련 법 규 ]

##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8.1.9.] [대통령령 제28576호, 2018.1.9., 일부개정]

-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시행 2015.1.1.]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979호, 2014.11.20., 일부개정]

-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09.2.5>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3.22.>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